외국인배우자 내국인과 결혼하여 중화민국국적으로 귀화신청시 호적등기 절차

韓文

내정부 2017년10월 수정

신청절차	접수기관	제출 서 류
결혼등기	호정사무소	I. 대만 국내에서 결혼한 경우 : (1) 결혼증서 (2) 외국배우자의 신분증명서류 및 외국주재 대만영사관에서 검증받은 혼인상황 증명과 그 중국어 번역본(번역본은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그리고 중국어 이름 취득 성명서 첨부. (3) 호적명부 (4) 국민신분증과 도장. II.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 : (1)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 사무처에서 검증받은 결혼증명서류와 이를 중국어로 번역한 내용 (2) 호적명부 (3) 국민신분증과 도장 (4) 외국배우자 신분증명서류 (5) 외국배우자가 대만에와 등기신청할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배우자가 중국어이름을 사용하겠다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현지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아 제출. ※ 외교부에서 공시한 특정국가의 사람과 결혼함에 있어는, 우선 외국배우자 국가에서 결혼등기를 마친후, 결혼증명서류와 그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 현지주재 대만 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면담을 신청하고 면담이 통과되면, 상기 외국에서 결혼한 자의 상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결혼등기를 할 수 있음.
거류비자 신청	신청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해외 주재 대만 영사관에서 거류비자를 직접 신청하십시오. 신청인께서 친척방문 비자로 대만에 입국한 경우에는 대만 각지역에 설치된 **외교부 영사 사무국(**외교부를 포함한 대만의 중부, 윈린, 쨔이, 타이난, 남부, 동부의 사무소) 에서 거류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이 60 일 이상의 체류기간 비자를 받았으며, 「연장불가」 (NO EXTENSION) 또는 거류신청 불가라고 기입되어 있지 않고, 친족방문 사유에 부합된 경우에는 내정부 이민서 각지역 사무처에서 직접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 영사 사무국 이나 외교부 중부, 윈린, 쨔이, 타이난, 남부, 동부의 사무처가 아니라도 신청가능 합니다.	III. 중화민국 배우자의 최근 3 개월내 발급된 대만호적등본 원본 1 부 (이미 결혼등기를 하여 결혼 기재사항에 외국배우자의 국적,외국이름과 출생일자가 명시되어야 함). IV. 신청인의 국가로 부터 발급받은 결혼등기증명 (혼인등기제도가 없는 국가라면,결혼증서로 갈음한다.). V. 신청인의 국가로 부터 발급받은 무범죄기록증명 또는 양민증. (발급일부터 1 년이내 야 하며, 증명서류에 기입된 유효기간을 넘으면 불가.). VI. 대만 위생복지부에서 지정한 외국인 신체검진 병원 또는 외국의 합격병원에서 발급한 3 개월내의 신체검진합격증명. VII. 여권 (여권유효기간이 반드시 6 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VIII. 최근 6 개월내에 찍은 2 인치 칼라 사진 2 장. IX. 거류비자의 신청비용은 대만 외교부 사무국의 홈페이지 http://www.boca.gov.tw/public/Data/4102315532271.pdf (미국여권 소지자는 상호적 수수료를 적용). 【이상 제 2 항에서 4 항까지의 서류를 외국에서 작성한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 사무처에서 검증받아야 하며,중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번역본을 첨부함.】 【단기비자로 대만에 입국하여,대만에서 비자기간이 넘은 경우에는 즉시 출국을 해야하며, 대만에서 거류비자를 재신청할 수 없음.】
외국인 거류증 신청	내 정 부 이 민 서 각도시,지역도시 시청 안내처	I. 거류비자로 입국한 사람 : (1) 외국인 거류증 신청서 1 부, 최근 1 년내에 찍은 칼라 증명사진.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과 같음. 내정부 호정사 글로벌 정보망 http://www.ris. gov.tw/웹사이트 참조) . (2) 여권과 거류비자 원본 그리고 복사본 1 부 (원본은 검사후 반환) . (3) 거류신청을 하는 사유를 밝히는 증명문서로, 대만국적 배우자가 결혼을 등기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4) 거주지 주소 증명서류. (5) 수수료 : 1 년기간 NT$ 1,000.-, 2 년기간 NT$ 2,000.-, 3 년기간 NT$ 3,000.-. II. 단기비자 60 일 이상의 소지자로, 비자 발급기관에서 연장불가 또는 기타제한을 하지 않은 유효비자를 갖고 입국한 사람 : (1) 외국인거류증 신청서 1 부, 최근 1 년내에 찍은 칼라 증명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 . (2) 여권과 단기비자 원본 그리고 복사본 1 부(원본은 검사후 반환). (3)**건강 검사일 부터 3 개월내 유효한 건강진단 증명서**.(외국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증명서류를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에서 검증받아야 함). (4) 발급받은지 1 년을 넘지 않은 원 국가에서 발급한 국내 전역 형사기록증명서 (최근 5 년내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증명서에 기입된 유효기간내이어야 함. (이를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아야 하며, 그 중국어 번역본도 현지 주재 대만영사관이나 대표처에서 검증받거나 대만 국내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함.) (5)거류사유를 증명할 만한 서류로, 대만국적 배우자가 결혼등기를 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6)거주지 주소 증명서류. (7) 수수료 : 1 년기간 NT$ 1,000.-, 3 년기간 NT$ 3,000.-. 별도 추가 금액 NT$ 2,200.-은 **체류 비자를 거류증으로 재신청한 수수료로** 받음. ※ 거주기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소 이전후 15 일내에 주소변경을 등기 신청해야합니다. **※ 외국 배우자가 처음으로 외국인 거류증을 받거나 결혼으로 인하여 거류 비자를 친척 방문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만 배우자와 함께 동행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에 체류기간이 넘을 때 까지 외국인 거류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일단 대만을 출국해야 합니다.**
중화민국 국적 귀화 신청. (신청 날짜로부터 계산하여 그전 3 년전까지 합법적으로 계속 대만에서 거주하였고, 거주 당시, 매년 183 일 이상 거주한 사람.)	신청인 주거지의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시청(현청)을 통해 내정부에 전달되어 승인 발급.	I. 국적귀화 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본인이 직접 현장에 오시어** 신청해야 하며,컴퓨터로 신청서 프린트) 와 최근 2 년내 찍은 **반신** 증명 칼라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 II. 합법적이고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또는 외국인 영구거류증.(**거류 기간의 남은 유효기간이 30 일이 되기 전에, 거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III. 중화민국 국적으로 귀화하는 신청인의 기본 언어능력 및 국민 권리의무 기본상식 인정기준 제 3 조에서 정한 증명서류: (1)대만 국내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1 년이상 취학한 증명서. (2)대만 국내의 정부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을 수업하여, 수료시간 총 72 시간이상 받은 증명서 첨부. (3)대만국적 귀화로 기본언어능력 및 국민 권리의무 기본상식시험 합격증명서로 60 점이상을 받은자 및 나이 만 65 세 이상으로 50 점 이상을 취득한자. IV. 대만국적 배우자로서 대만국내에 호적지가 없으며, 결혼등기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류를 첨부하여(해외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그곳의 대만 영사관이나 대표 사무처에서 검증을 받는다. 외국어로 된 결혼증명서는 해당 영사관이나 대표 사무처로 부터 검증받은 것을 첨부하거나, 대만국내의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받은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해야 한다.)그리고, 외국인 배우자 및 대만국적 배우자의 국적 신분증명서가 필요하며, 대만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의 대만주재 영사관이나 대표사무처에서 검증을 받은 혼인상황 증명서와 함께 그것의 중국어 번역본을 필요로 합니다. V. 증명서 수수료 NT$ 1,200-。(대만국내의 우체국에서 송금수표를 구입하여 지불함. 수취인 : 내정부) ※ 상기 3 번 항목의 증명서에 있어, 호정정보망 국적행정작업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인의 거류 정보, 입출국 기록, 형사안건 기록 및 본국 배우자와의 결혼등기는 호적등기소에서 호적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 만 지 역 거 류 증 신 청	내 정 부 이 민 서 각도시,지역도시 시청 안내처	
원(본) 국적 포기 신청	신청인 국적의 대만 주재 영사관 또는 대표사무처	I. 거류 신청서 1 부, 탈모 반신 증명 칼라 사진 1 장 (국민신분증의 사진규격과 같음). II. 국적귀화 허가증서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 III. 외국인 거류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 IV. 거주지 주소 증명서류로, 중화민국 배우자와 결혼등기한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V. 수수료 NT$1,000.-
국적포기 증명서 취 득 못 한 경 우	**신청인 주거지의 호정사무소에서 신청하면 현지 시청(현청)을 통해 내정부에 전달되어 기간 연장의 승인받음.**	※ 원 국적을 포기하는 신청에 있어는 저희 대만 본국에 주재하고 있는 원 국적 영사관이나 대표 사무처에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대만 본국에 주재 하는 해당국 영사관이나 대표기관 사무처에서 발급한 원 국적 포기증명서는 저희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 해외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저희 중화민국 대사관 또는 대표 사무처의 검증을 받고 나서, 저희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꼭 중국어 번역 본을 첨부하여, 검증이나 재검증의 확인을 받거나, 혹은 대만에서 공증인으로 부터 중국어 번역본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날짜로 부터 1 년내에 원국적 포기 증명서를 저희 내정부에 제출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기일자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기일 30 일전에,이미 신청했다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기간연장을 해야 하며, 저희 외교부의 심사를 통해 해당국가의 법률이나 행정절차로 인한것이 확증이 되면, 연장해드립니다. 연장기간이 지나서도 원국적 포기증명을 제출하지 않으면 귀화허가가 말소되며, 원국적 포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착거주를 허가하지 않습니다.
국적포기 증명서 취 득 한 경 우	**주 거 지 의 호 정 사 무 소 에 서 신청하면 현지 시청(현청)을 통해 내정부에 전달되어 등록.**	I. 유효기간 연장 시청서. II. 원 국가 정부기관에게 국적포기를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상관문서. 예로: 신청서 복사본, 원국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수취했다는 증명서 또는 영수증 등으로, 해당국가 주재 본 중화민국 영사관 또는 대표기관 사무처를 거쳐, 대만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은것 : 해외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국가 주재 대만 영사관 또는 대표기관 사무처에서 검증받아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그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첨부하여 검증 및 재검증을 받았거나, 대만국내의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내정부로 부터 연장신청을 기각당한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말소 합니다.
대만정착증신청 (일정 거주기간을 채운 사람: 거주 승인날부터 1 년동안 계속 살았거나, 2 년이상 살고 한해에 270 일이상, 혹은 5 년이상 살고 한해에 183 일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내 정 부 이 민 서 각도시,지역도시 시청 안내처	I. 대만지역 거류증 (검사 완료후 반환) 해드립니다. II. 원국적 포기 증명서류 (해외 주재 대만 영사관 또는 대표기관 사무처에서 발급한 원국적 포기 증명서는 대만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아야 하며; 해외에서 발급받은 것은, 해당국가 주재 대만 영사관 또는 대표기관 사무처에서 검증받아 대만 외교부의 재검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중국어 번역본은 같이 첨부하여 검증 및 재검증을 받거나, 대만국내의 공증인으로 부터 공증받은 중국어 번역본) 이어야 합니다.
호적등기 신청후 중화민국 국민신분증 취득	**재적지 호정사무소**	I. 정착 신청서 1 부, 반신 증명 칼라 사진 1 장 (국민신분증 사진규격과 같음)。 II. 대만지역 거류증. III. 중화민국 배우자의 호적명부 또는 국민신분증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이혼한 경우에는 첨부않함). IV. 최근 3 개월내의 건강진단 합격증명.(대만의 행정원 위생서에서 승인한 병원에서 검사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 따라 검사항목 “을품”에 맞추어 실시한 건강검사이어야함.) V. 기타 증명서류, 예로:중화민국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재적 주소로 있던 곳의 주택세금 용지 또는 임대계약 원본과 복사본 (원본은 검사후 반환.) VI. 등기우편-반송용 봉투에 주소・수신인을 기재하여 제출. VII. 수수료 NT$600.-
		I. 내정부 이민서로부터 신청인에게 호적등기할 정착증을 통보함. II. 호적명부. (단독으로 입주한 경우에는 면제. 단,단독으로 입주한 주택의 소유권증명등 관계서류는 제출해야함) III. 최근 2 년내 찍은 정면 반신 칼라 증명사진 1 장 또는 디지털 사진. (국민신분증 사진규격과 같음. 내정부 호정사 글로벌 정보망 http://www.ris. gov.tw/웹사이트 참조) IV. 호적명부 처음 발급시, 수수료 NT$30.- 국민신분증 처음 발급시, 수수료 NT$50.- ※ 신청인은 호적에 입적을 하고 나면,곧 국민신분증을 발급 받게됨, 상세한 내용은 현지의 호정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